

강원도의회 공무직(사업실무원·청사미화원)채용 공고

강원도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직(사업실무원·청사미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강원도의회 의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채용부서	인원	성별	수행업무 내용
공무직 (사업실무원)	의정 관실	1명	남	· 청사 방문객 출입 관리 및 안내 · 청사방호 및 순찰 · 주차장 관리 및 차량출입 관리·안내 등
공무직 (청사미화원)		1명	여	· 강원도의회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2 근무조건

가. 보 수 :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준용

나. 근무시간 : 주5일(평일 월~금, 공휴일 휴무), 1일 8시간

사업실무원 (09:00 ~ 18:00), 청사미화원 (08:00 ~ 17:00)

※ 중식시간 : 1시간, 근무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고용, 산재, 건강보험)

※ 사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조치(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라. 근로기간 : 근로계약일('23.5월.예정)로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근무

※ 근로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해제(업무능력 부족, 무단결근, 불법행위 등)

3

응시자격

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나.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202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023.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라.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곤란함이 없고, 상용 또는 기간제근로자(일용인부)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자로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된 사실이 없는 자

바. 「강원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 제18조에 따른 아래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4. 17.(월) ~ 4. 19.(수), 3일간 / 09:00부터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2023. 4. 19.(수)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접수 시 반드시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 요망(033-249-5752)

※ 우)24266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부합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25.(화)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강원도의회 및 강원도청) 게시

※ 홈페이지 : (강원도의회) 의회소식 - 시험정보 / (강원도청) 도정마당 - 채용정보

나. 2차 시험(면접)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공고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공고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강원도의회 및 강원도청) 게시

※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는 차순위자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사진 2매 부착)
- 나. 이력서 1부(첨부양식)
- 다.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라.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이력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마.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첨부양식)
- 아. 공정채용 확인서 1부(첨부양식)
- 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서류심사 및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의회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라.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14일 이내 본인 요구 시 반환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
-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행정절차 중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 순위 응시자를 선발합니다.
- 바. 상습적인 결근이나 지각을 하거나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채점 등 내부검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033-249-5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leekyungjin@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관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5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의회의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